

目 次

1. 1995年度 平昌郡 業務計劃	36
2. 平昌郡農村指導所北部地區支所設置條例廢止條例案	79
3. 平昌郡發電所周邊地域支援事業特別會計設置與運用條例案	81
4. 平昌郡市場管理與使用條例等改正條例案	84
5. 平昌郡物品管理條例等改正條例案	90
6. 平昌郡行政機構設置條例案	94
7. 平昌郡地方公務員定員條例案	107
8. 平昌郡建築條例等改正條例案	110

1995年度

業 務 計 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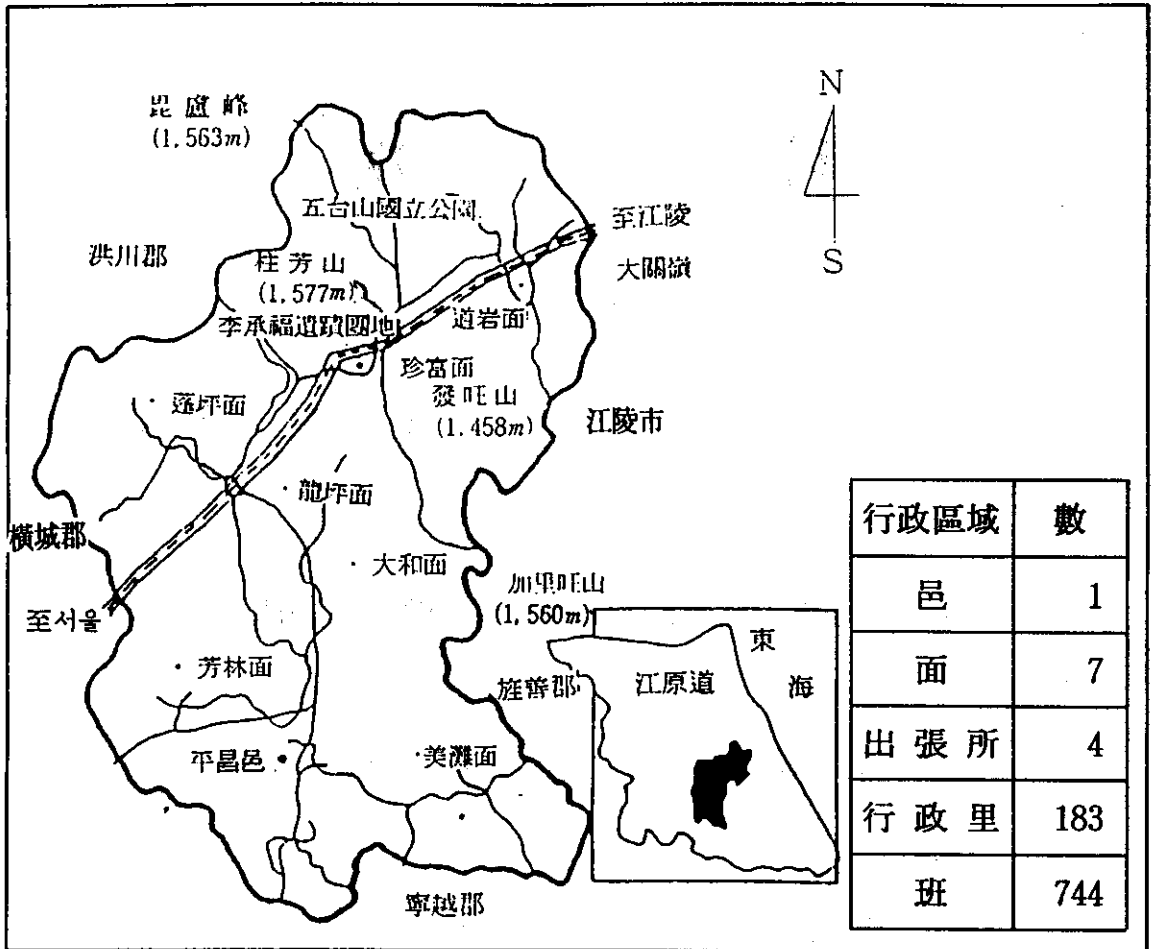
平 昌 郡

目 次

- 一 般 現 況
- 地 域 特 性 及 課 題
- '94 郡 政 的 成 果 及 教 訓
- '95 郡 政 方 向 及 力 點 施 策
- 懸 案 事 項

※ 附表：地域內 他機關 投資事業

一般現況



— 강원도 남부 内陸 위치 : 1,000m 이상 高地 23개소 —

- 面積 : 1,461km² (農地 147, 林野 1,238, 其他 76)
- 世帶數 : 14,449世帶 (農家 6,402, 非農家 8,047)
- 人口 : 50,522名 (前年 對比 1,202名 減少)
- 公務員數 : 619名 (1인당 擔當住民 82名)

財 政 規 模

總 : 61,653百萬元 : '94對比 129%

- 一般會計 _____ 55,913百萬元(91%)
- 特別會計 _____ 5,740百萬元(9%)

一般會計

○ 歲 入

- 依 存 수 입 : 42,725百萬元 (76.4%)
- 自 體 数 入 : 10,476百萬元 (18.8%)
- 指 定 数 入 : 2,712百萬元 (4.8%)

○ 歲 出

- 投 資 事 業 比 : 31,796百萬元 (56.8%)
- 基 本 經 營 比 : 23,234百萬元 (41.5%)
- 豫 備 費 · 기 타 : 883百萬元 (1.7%)

※ 郡民 1人當 : 擔稅額 228千원, 投資額 628千원

特別會計 (6種)

(단위 : 백만원)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 기금	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 활안정기금	농공지구조성 및관리사업
4,170	725	465	253	91	36

地域特性과 課題

□ 廣闊한 면적으로 山地개발의 無限 發展性 潛在

⇒ 농업과 관광의 主 産業化, 淸淨 농업地帶 육성

□ 天惠의 관광자원으로 高原觀光休養地 浮刻

⇒ 新規 관광休養地 지속 개발로 冬季스포츠 搖籃化

'97월드컵스키대회, '99冬季아시안게임 성공적 開催

□ 接近路의 다양으로 中部內陸의 열린 지역

⇒ 內陸의 據點 도시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 漢江 發源地의 最上流 지역으로 淸淨地帶

⇒ 自然環境의 보존과 개발의 調和로 淸淨性 지속 유지

'94郡政의 成果와 敎訓

'94郡政의 成果와 敎訓

【成 果】

□ 郡民의 화합과 自尊意識을 振作시킨 한해

- 농 촌 잘 살 기 운 동 의 본 賞 수 상
- 제 17 회 魯城祭 行事의 완전 民間主導 정착
- 제 12 회 강원도 民俗藝術競演大會의 종합 우수상
- 제 25 회 강원도 韓牛 競進大會의 종합 우 승
- 평창의 歷史와 뿌리찾기를 위한 郡誌 및 邑面誌 발간

□ 劃期的인 地域開發 態勢 確立

- 平昌郡 종합 개발 10個年 계획 수립
- 錦塘溪谷 郡立公園 기본계획 수립

【敎 訓】

- 大型事故 예방을 위한 부실시공방지 및 安全點檢 중요성 自覺
- 松亭宅地 分讓 低調로 稅收결함,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 自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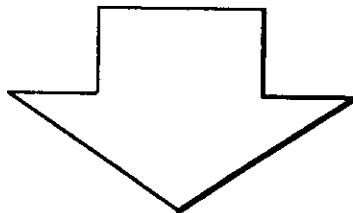
'95 行政 環境 變化

□ 政治的 狀況

- 세계 무역기구 出帆으로 國境없는 무역전쟁시대 도래
- 全面 地方自治 실시로 地方自治團體間 競爭심화

□ 行政的 狀況

- 환경보호, 餘暇善用등 주민의 삶의 質 향상 추구
- 관광, 레저産業 활성화에 따른 지역 利己主義 澎湃
- 江原道 定道600周年 기념사업 및 환동해권 시대 主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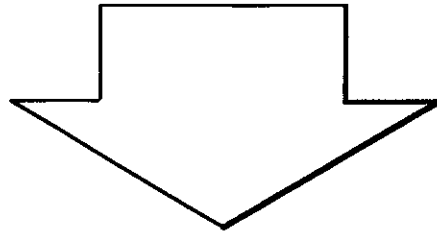
國·內外的으로 완전 競爭體制突入, 주민 欲求 增加

'95 郡政方向斗力點施策

'95 郡 政 方 向

【郡 政 目 標】

밝고 豐饒로운 새 平昌建設



【力 點 施 策】

1. 世界化 實現과 地方自治具現
2. WTO出帆 對應 競爭農業 育成
3. 水質保全과 快適한 生活環境 造成
4. 精 誠 어 린 福 祉 增 進
5. 均 衡 的 인 地 域 開 發 促 進
6. 國 民 餘 暇 地 帶 開 發 과 文 化 · 體 育 振 興

세계화 實現과 地方自治具現

1. 世界化의 地方的 實現

○ 世界化를 위한 力量 結集

- 世界化 意識 教育 : 공무원, 사회단체, 주민
- 接客業所의 서비스 향상교육 : 관광업소, 음식점등
- 전공무원의 1인 1외국어 敎養 : 英語, 日語, 中國語등
- 기본會話集 제작 배부 : 택시기사, 관광업소, 음식점

○ 國際水準의 案内施設 擴充

- 홍보물, 안내시설의 外國語 併記 : 안내책자, 안내포지
- 多衆 이용시설의 國際 수준화 : 터미널, 공중화장실

○ 世界化의 無限競爭力 強化

- 지방 행정組織 診斷 : 경영화, 미래화 지향
- 지방공무원 海外研修 확대 : 관광, 첨단 농업분야
- 세계화對應 專門人力 養成 : 기관, 기업체 1~2명
- 地域 産物의 세계 商品化 : 화훼, 무공해 토마토, 양채류등

○ 國際 交流 協力 活性化

【 國際都市間 자매결연 】

- 地方自治團體 : 평창군+일본 니가다현 시오자와 마찌
- 民間團體 : 황계번영회 + 시오자와 관광협회
- 交流分野 : 자치행정, 관광, 농업분야 실무교류

【 外國 觀光客 誘致團 派遣 】

- 誘致團 : 6名(平昌郡, 龍平리조트, 五台山公園管理事務所)
- 派遣團 : 일본, 싱가포르, 대만,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 派遣時期 : 年 2回(丹楓+골프) (雪景+스키)
패키지상품개발(관광숙박, 스키이용시설 할인권)
- 觀光弘報 : 관광공사, 여행사 ⇨ 觀光客 誘致

【 農 · 畜產物 수출센터 설치 】

- 組織 : 평창군, 농협, 원협, 축협, 영농법인
- 機能 : 수출상품의생산, 품질화, 규격화지도, 수출상담
- 輸出體系 : 평창군 수출센터 ⇨ 농산물유통공사, 바이어
- 輸出商品 : 양채류, 고냉지채소, 화훼, 무공해토마토, 특산품등

2. 本格的 地方自治 具現과 公明選舉 實踐

○ 成熟한 自治力量 培養

- 「公務員」의 意識 變化 : 無限경쟁시대 對應
- 「住民」의 公僕으로 봉사 : 고객으로서 質좋은 서비스 제공
- 「地域」의 和合으로 안정 : 地域間갈등, 集團利己主義克服
- 「議會」의 同伴關係 構築 : 지역발전의 牽引 역할

○ 自主財源의 持續的 擴充(經營收益事業)

- 行政의 經營마인드화 도입 : 郡政사업의 採算性 審査 投資
- 관광개발의 民間資本 誘致 : 지역개발 촉진, 자주재원 확보

【 地域開發 企劃團 運營 】

- 構成 : 20名(공무원+민간)
- 機能 : 自願프로젝트팀화(地域開發의 연구, 기획 등)
- 分野 : 관광개발, 농축산개발, 민간자본개발사업등

【 車項地區 溫泉開發 】

- 位置 : 道岩面 車項里
- '94年 1次探查 : 地下 560m, 溫度 28°C(溫泉要件 25°C)
- '95年 2次探查 : 地下 800m. 溫度 35°C, 1日 500T/D 採水推定

【鑛泉飲用水開發】

- 位 置 : 平昌邑 藥水里
- 地名傳說 : 大東與地圖上에 「藥水」 表記, 水質靈驗 傳來
- '94 推 進 : 地質·水質 分析(한국자원연구소)
地質: 麥盤石, 水質: 게르마늄 賦存
- '95 計 劃 : 探查 試錐 1~2孔, 事業費 23,000千원

○ 돈 안쓰는 깨끗한 公明選舉 實踐

- 公明正대한 선거 정착 : 돈안쓰는 선거, 地域間갈등없는 선거
- 공무원의 嚴正 중립자세堅持 : 確然한 法執行, 오해소지배제
- 선거행정의 完璧한 遂行 : 선거關聯 法令熟知, 공무원 교육
- 선거기간 社會紀綱 확립 : 법규위반, 秩序紊亂행위 단속 철저
- 부정선거 특별監視團 運營 : 선거위반행위 提報, 선거방법 홍보

【선거인명부 索引 P.C設置】

- 對 象 : 12개소(선거인수 1,500명 이상 투표구)
- 裝 備 : 군 및 읍면 保有 P.C 12台

3. 信賴奉仕의 公職風土 造成

○ 公職者의 自己 刷新

精神 ⇒ 結果에 責任지는 「主人精神」

姿勢 ⇒ 住民에게 信賴받는 「참된奉仕」

行動 ⇒ 찾아서 일하는 「公職者像」

○ 全 公직자 親切의 可視化

- 친절의 체질화 : 「禮의 行動」 「상냥한 말씨」 「친절한 전화」
- 對民자세 획기적 轉換 : 「肯定」 「積極」 「能動」 자세
- 친절 倍加 運動 전개 : 住民을 내家族, 내이웃처럼 對面
- 타기관 民願출원 비교체험 : 소감발표, 토론회 개최

○ 滿足한 民願處理

- 民願 1回 訪問처리 : 처리상황 일일결산
- 苦衷민원 終結처리 確行 : 陳情, 탄원, 告發, 建議등

기관장先覽 ⇒ **현지방문, 관련부서협조** ⇒ **可否決定**

-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운영 : 申告時 즉시 처리

○ 住民과의 信賴, 親和感 造成

- 郡守 主2회 奧地마을방문 : 불만, 불편사항 聽取
- 邑面長 1日 1마을 방문 : 주민대화, 民意 收斂
- 마을담당공무원 출근 電話 : 安否, 慶弔事, 動向 把握
- 郡職員 出身마을 담당제 : 마을행사, 慶弔事, 宿願 등 郷土管理
- 공무원 주1회 자율 봉사 : 교통질서, 자율방법, 농촌일손돕기

○ 地域 自尊意識 鼓吹

- 地域卑下, 敗北意識 拂拭 : 無待接, 落後, 疎外의 막연한 認識
- 否定的 意識 追放 : 공직자 ⇨ 사회단체, 주민 弘報
- 地域開發, 자랑거리 발굴 : 지역발전상 객관적 분석 홍보

○ 公職紀綱의 刷新

- 엄정한 근무 紀綱 확립 : 無事安逸 공직자 追放
- 能力 위주의 人事 운용 :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優待
- 공무원 厚生福祉 시책확대 : 해외연수, 효도관광, 취미활동
- 公職 非理 剔抉 : 각종 不正·非理 原因제거

4. 現場行政의 強化

○ 발로 뛰는 現場, 確認 행정의 實踐

- 參與行政** ⇨ 「주민 삶의 現場」 기관장, 幹部, 직접 體驗
- 民意行政** ⇨ 「疎外 그늘진곳중심」 苦衷, 隘路, 宿願 해결
- 豫防行政** ⇨ 「脆弱 要素 중심」 사건, 사고, 집단행동 遮斷
- 責任行政** ⇨ 「지 역 掌 握」 문제점 시정, 시책 反映

【5大 重點 現場 確認 對象】

- 農政 施策 반대 「動搖 현장」 ⇨ 「住民不滿」 解消
- 嫌惡 施設 반대 「集團행동현장」 ⇨ 「集團民怨」 解決
- 고층건물, 도로건설 「大型공사현장」 ⇨ 「安全事故」 豫防
- 가스, 유류, 저장소 「危險시설현장」 ⇨ 「人爲災難」 豫防
- 우박, 태풍, 수해 「災 害 현 장」 ⇨ 「自然災難」 克復

○ 1마을 1室課 姉妹結緣

- 對象마을 : 奧地마을, 저소득민 密集마을, 開發意慾마을
- 마을支援 : 체육대회, 敬老잔치, 隘路 건의사항 解決

5. 社會安定과 人間 道德性 回復

○ 人災性 大型 事故豫防 強化

— [危險시설 중점관리대상 : 119개소] —

- 補 修 : 92개소 (교량 48, 공공시설 44)
- 再 架 設 : 27개소 (교량 27)
- 所要事業費 : 6,852百萬元 (보수 689, 재가설 6,163)

- 「地方安全 점검 대책반」운영강화 : 월 1회 점검
- 위험 시설별 優先순위 決定투자 : 64개소 2,946百萬元
- 脆弱 要因 중점 豫防 활동 確行 : 기관장 직접 점검

○ 道德性 回復 教育 內實化

家 庭 : 健康한 家族 ⇨ 내 家族부터 ⇨ 孝

學 校 : 健康한 人間 ⇨ 모든 學生이 ⇨ 忠

社 會 : 健康한 社會 ⇨ 모든 國民이 ⇨ 禮

- 社會教育 : 郡政시책교육, 반사회, 각종교육 ⇨ 義務化

- 學校教育 : 道德, 倫理, 人性 교육 ⇨ 勸 獎

○ 새家庭·새社會 運動의 활기찬 추진

家庭

: 家庭의날 운영, 가훈갓기, 일찍귀가하기,
父母 찾아뵙기, 안부전화드리기, 이웃돕기

社會

: 불법類廢업소단속, 불건전 영상물 규제, 학교주변
危害環境淨化, 청소년 善導活動, 4大秩序 지키기

- 모범家庭, 團體 施賞 및 垂範 사례 소개 : 8個家庭, 5個團體
- 住民 自願 警察制 運營 : 公務員, 教師, 住民 20名

○ 4大 秩序運動의 確立

基礎秩序

: 작은 秩序부터 習慣化 : 침안빨기, 줄서기

街路秩序

: 品位있는 거리 回復 : 주·정차 질서지키기

慰樂秩序

: 健全한 營業풍토 조성 : 퇴폐, 변태영업안하기

風俗秩序

: 淫亂, 低質문화 추방 : 음란비디오 안팔기

- 民間 단체 自律선도 : 자생조직, 料食業組合등 국민운동단체
- 駐·停車 질서 단속 강화 : 團東員 5名 ⇨ 7名
- 交通安全施設의 확충 : 307個所 59百萬원

WTO出帆對應 競爭農業 育成

1. 尖端 農業 施設 育成

○ 花卉 생산 流通團地 조성

- 對象 : 五台山 花卉組合 (8농가)
- 施設 : 유리온실 2.3ha, 저온저장고 100坪, 조직배양실 22坪
- 投資 : 3,862百萬元 (國道費 1,352, 郡費579, 自擔 1,931)
- 백합, 장미 등 年間 920천주 生産 1,040百萬元 所得期待

【 成長作目 示範團地 運營 成果 】

- 位置 : 龍坪面 才山 1.3里 (14농가 參與)
- 規模 : 6,048坪 (유리온실등 시설 4동)
- 投資 : 5,000百萬元 (國道費 2,550, 郡費 450, 自擔 2,000)
- 粗收益 : 토마토 418㎏ 885百萬元
- 經營費 : 燃料費, 관리비 591百萬元
- 純收益 : 294百萬元 (농가당 21百萬元)

○ 高冷地菜蔬 生産 圃地 造成

- 對象地域 : 大和, 珍富
- 規 模 : 비가림시설 10ha, 灌水시설 10ha, 밭整地 9ha
- 投 資 : 830百萬元 (國道費 290, 郡費 125, 自擔 415)
- 高冷地 洋菜類, 年間 345%_T생산, 330百萬元 소득기대

○ 園藝作物 現代化 施設

- 規 模 : 비닐하우스 8ha
- 投 資 : 960百萬元 (道費 192, 郡費 288, 自擔 480)
- 고추, 菜蔬類, 花卉등, 年間 276%_T생산, 240百萬元 소득기대

○ 高冷地 菜蔬 地下水 開發

- 規 模 : 地下水 7공, 用水供給施設 7식
- 投 資 : 315百萬元 (國道費 203, 郡費 40, 自擔 72)
- 高冷地 菜蔬 재배면적 16ha 灌수로 생산성 提高

2. 農産物 加工, 流通施設 擴充

○ 産地加工 工場 建立

- 藥草加工 공장

- 施設 : 건물 100坪, 기계 15種, 부지 401坪
- 事業費 : 290百萬元(國費 100, 融資 60, 自擔 130)
- 事業主體 : 江原 藥草營農 組合
- 期待效果 : 年間 885% 생산, 72百萬元 소득期待

【 '94 推進 成果 】

- 김치加工공장 : 건물 713坪, 기계 48種, 1,945百萬元 투자
- 成果 : 김치, 깍두기, 年間 4,500% 생산 1,125百萬元 소득
- 메밀加工공장 : 건물 632坪, 기계 45種, 1,106百萬元 투자
- 成果 : 메밀가루, 국수, 年間 80% 생산 340百萬元 소득

○ 農産物 包裝센터 建立

- 施設規模 : 3개소(건물 1,400坪, 기계 8種)
- 事業費 : 3,500百萬元(國費 1,400, 郡費 1,050, 自擔 1,050)
- 事業主體 : 珍富·道岩農協, 才山 營農法人
- 期待效果 : 年間 200,000%, 選別, 包裝, 貯藏

3. 地域特性에 맞는 所得源 開發

○ 自動化 育苗場 設置

- 規 模 : 유리온실 500坪, 311百萬元 (鍾阜營農法人)
- 年間 고추, 토마토등 育苗 400萬株생산, 280百萬元 소득기대

○ 廢蹟 利用 여름 느타리버섯 栽培

- 規 模 : 10棟 500坪 120百萬元
- 年間 버섯 50 % 생산, 113百萬元 소득기대

○ 여름양송이, 高冷地느타리버섯 生産施設

- 規 模 : 6棟 300坪 38百萬元
- 年間 버섯 24 % 생산, 54百萬元 소득기대

○ 生藥 生産 施設

- 規 模 : 調製시설 100坪, 生藥재배 19ha, 395百萬元
- 年間 育苗 36萬株, 生藥 54%생산, 475百萬元 소득기대

○ 고추냉이(물와사비)栽培

- 規 模 : 300坪, 69百萬元
- 年間 와사비 0.4%생산, 24百萬元 소득기대

4. 農業 生産 基盤 造成

- 營農 基盤 造成 ————— 6,724百萬元
 - 耕地 整理 : 4個지구 108ha, 2,737百萬元
 - 밭 基盤 정비 : 56ha, 1,058百萬元
 - 農業用水 개발 : 管井2, 導水路2, 460百萬元
 - 地力 增進 : 客土 1,928ha, 2,469百萬元

- 營農 機械化 擴大 ————— 1,362百萬元
 - 共同 利用 조직 : 9個團(200個團 ⇨ 209個團)
 - 일반농가 農機械구입 지원 : 807台 (685台 ⇨ 1,429台)
 - 농기계 保管 倉庫 : 4棟 (3棟 ⇨ 7棟)
 - 委託 營農 會社 設立 : 2個社(4個社 ⇨ 6個社)

- 共同 堆肥 製造場 設置 ————— 964百萬元
 - 規 模 : 2棟 1,000坪 (大和, 龍坪)
 - 톱밥 + 鷄糞 醱酵堆肥, 年間 9,000 ㎏ 생산

- 精銳 專業農 育成 — 8農家(13農家 ⇨ 21農家)400百萬元

- 쌀 專業農 育成 — 35農家 1,348百萬元

5. 畜産經營 改善

○ 養豚團地造成 : 大和面 新里

【事業概要】

- 施設規模 : 부지 15,000坪, 豚舍 15棟 5,000坪
- 飼育規模 : 5農家 15千頭(협동사업)
- 事業費 : 2,986백만원(補助 59, 融資 1,500, 自擔 1,427)

【시설의 현대화 ⇨ 생산비 절감, 環境汚染防止】

○ 家畜飼育 基盤造成 ————— 1,572百萬元

- 韓牛, 젓소 競爭力 향상사업 : 39個所(基盤 18, 飼育 21)
- 草地개발 및 飼料작물 재배 : 272ha (草地 45, 호맥 227)
- 젓소 能力 倍加 마을 육성 : 400頭 (능력검정, 젓소등록)

○ 家畜環境汚染防止 및 資源化 利用 ————— 153百萬元

- 젓소똥밥 醱酵 牛床 설치 : 6個所, 48百萬元
- 家畜糞尿유기질 肥料化사업 : 1個所, 33百萬元(2個所 ⇨ 3個所)
- 家畜糞尿 처리 시설 : 13個所, 72百萬元(137個所 ⇨ 150個所)

6. 山林資源의 所得化

- 山地資源의 造成 擴大 ————— 3,489百萬元
 - 조림 953ha • 육림 3,436ha • 임도 15km • 야계사방 2km
 - 산초나무 團地造成 : 自生團地 육림 2ha, 養苗 100千本

- 徹底的 山林保護 ————— 2,375百萬元
 - 산불방지 체계확립 : 鎭火隊 3,630名, 유급순산원 80名
 - 솔잎혹파리 防除 : 樹幹注射 3,400ha, 被害木伐採 1,350ha

7. 地域經濟의 安定

- 地域物價의 安定的 管理
 - 개인서비스요금 중점 관리 : 44개품목, 303개업소
 - 物價 지도, 단속 활동강화 : 공무원, 모니터요원 활용

- 平昌 農工團地 運營 活性化
 - 業 體 : 17개업체(가동11, 가동준비3, 휴업3)
 - 가동율 提高 : 11개업체 ⇨ 17개업체, 자금지원 600百萬元
 - 내고장 產品 팔아주기 운동 전개 : 11개업체 20개품목

8. 農村定住 意慾 提高

○ 快適한 田園集團마을 造成('94~'96)

【 農村定住 生活圈 開發事業 】

- 位 置 : 大和面 大和5里 陽地마을
- 規 模 : 敷地 19千坪, 住宅 81棟
- 投 資 : 3,732百萬元(補助 2,000, 融資 1,732)

- 推 進 實 績 : 부지매입, 기본 및 실시 설계 1,197百萬元
- '95 計 劃 : 택지조성, 주택, 오수 처리시설 2,535百萬元

○ 農村住居 環境改善 _____ 2,249百萬元

- 부엌, 목욕탕 개량 : 226棟 (1,362棟 ⇨ 1,588棟)
- 化粧室 개량 : 226棟 (4,004棟 ⇨ 4,230棟)
- 農村住宅 개량 : 118棟 (1,350棟 ⇨ 1,468棟)

○ 農村 마을길 鋪裝 _____ 22個路線 6.2km 620百萬元

○ 奧地開發事業 _____ 2個所(橋梁·低溫貯藏庫)757百萬元

9. 農村 잘살기 運動의 定着

○ 面 福祉會館 운영 활성화

- 披露宴場 시설 : 1棟(4棟 ⇨ 5棟) 50百萬元
- 結婚備品 보강 : 드레스 22벌(구입 4, 증여 18)
- 休息空間 조성 : 테니스장, 그네, 놀이施設, 벤취 등

【 '94年 推進 成果 】

- 結婚·回甲등 慶事 121件
- 목욕탕이용 72千名
- 費用節減 183百萬元(모임 120百萬元, 목욕탕 63百萬元)

○ 健全 소비생활의 정착

- 消費享樂 風土 자제 雰圍氣 誘導 : 근검, 절약, 저축권장
- 慶吊事의 호화사치성 浪費요인 제거 : 화환, 축의금 줄이기

○ 農村 잘살기 運動 大賞制 運營

- 對象마을 : 負債輕減, 貯蓄增大 마을
- 施 賞 : 4個마을(大賞 1, 本賞 1, 獎勵賞 2) 46百萬元

水質保全과 快適한 生活環境造成

1. 맑은물 供給

○ 蓬坪 상수도 시설 확충('94 ~ '96)

- 規 模 : 600T/D ⇨ 9,500T/D
4,800百萬元(郡費 2,300, 普光 2,500)
- 推進實績 : 기본 및 실시 설계
- '95 計 劃 : 부지매입, 취수, 정수, 배수시설
2,500百萬元(株, 普光 부담금)

○ 珍富 상수도 시설 확충('94 ~ '96)

- 規 模 : 2,000T/D ⇨ 9,500T/D
5,000百萬元(國費 2,500, 郡費 2,500)
- 推進實績 : 기본 및 실시설계
- '95 計 劃 : 부지매입, 취수, 정수, 배수시설
2,500百萬元(國費 2,500)

- 상수도 老朽管 교체 ————— 1,700m, 147百萬元
- 平昌상수도 取水泫 설치 ————— 150m, 180百萬元
- 道岩상수도 配水池 확장 ————— 1,000T/D, 100百萬元
- 簡易상수도 新設 및 보수 ————— 4個所, 200百萬元

2. 清潔한 生活環境 改善

○ 쓰레기 從量制의 定着

- 從量制 履行率 제고 : 現在 92% ⇨ 1月末까지 100%
- 규격봉투 販賣所 확대 : 129個所 ⇨ 150個所
- 從量制 지도, 단속 : 1次 ⇨ 추적계도, 2次 ⇨ 과태료 부과
- 從 量 制 홍 보 : 8회 800名(사회단체, 업소, 주민)
- 清 掃 裝 備 확 충 : 압축진개차 1台, 자동상차기 20個

○ 生活쓰레기 處理場 補強

- 衛生쓰레기 埋立場설치 : 2個所 1,700百萬元(美灘, 大和)
- 衛生쓰레기 敷地 확보 : 2個所 1,167百萬元(珍富, 道岩)
- 쓰레기 燒却爐 설치 : 2個所 250百萬元(平昌, 珍富)

○ 環境汚染防止 施設 擴充

- 農村 汚水 처리 시설 : 2個所(3個所⇨5個所) 597百萬元
- 養殖場 水質 淨化 시설 : 2個所 100百萬元
- 家庭쓰레기 燒却用 화덕 : 240個 7百萬元

精誠어린 福祉增進

1. 低所得層의 自立意慾 提高

【現 況】

- 주택보호 대상자 : 693家口 1,209名(전 인구의 2.4%)
- 자활보호 대상자 : 391家口 1,175名(전 인구의 2.3%)

○ 더불어 함께사는 生活 保護 ————— 1,460百萬元

- 주택 보호자 生計 지원 : 1,209名 974百萬元
- 子女學費, 醫療費 지원 : 2,786名 486百萬元

○ 希望을 주는 自活能力 培養 ————— 207百萬元

- 自活 安定 基金 용자 : 18世帶 91百萬元
- 雇 傭 促 進 훈 련 : 89名 47百萬元
- 勞 賃 就 勞 사 업 : 8個所 69百萬元

○ 疎外階層 特別 保護 ————— 32百萬元

- 障 碍 人 保 护 支 援 : 57名 13百萬元
- 少年·少女 家長 보호 지원 : 35名 15百萬元
- 母子·父子 家庭 보호 : 8世帶 4百萬元

2. 生活福祉 施惠 擴大

○ 健全한 老後생활 支援 ————— 376百萬원

- 敬老堂 운영 維持費 지원 : 21個所
- 老人 生活 支援 : 5,437名
 - 老齡手當, 노인승차권, 노인건강진료, 틀니시술
- 老人 일거리 提供 : 8個所
- 無依託 노인 回甲 잔치 : 25名

○ 올바른 청소년 育成 ————— 16百萬원

- 無職 靑少年 직업 훈련 : 10名
- 靑少年 進路 교육 : 15名
- 靑少年 어울마당 운영 : 12回

○ 女性 地位向上과 能力 開發 ————— 25百萬원

- 여성 敎養 및 경제교육 : 800名
- 여성 指導者 教育 : 30名
- 趣味 敎室 운영 : 60名

3. 公設墓地 造成('93 ~ '97)

- 位 置 : 芳林面 芳林 2里 山 702番地 一圓
- 規 模 : 53,900坪 (墳墓 4,400基)
- 所要事業費 : 1,900百萬元

- 推進狀況 : 敷地 확보, 기본설계, 207百萬元 投資
- '95 計劃 : 진입로 開設 400m, 200百萬元 投資

4. 保健·醫療 施惠의 質 향상

○ 良質의 醫療서비스 확대

- 移動보건醫療院 운영 : 16回 (內科外 5個科, 診療班 15名)
- 家庭방문 醫療 상담 : 1,147家口 (健康診斷, 救急藥 支給)
- 傳染病 예방 接種 : 肝炎 등 6種 26千名

○ 清潔한 衛生 接客業所 환경조성

- 不正, 不良 식품 단속 : 月 4回
- 深夜, 頹廢, 變態영업 단속 : 月 4回
- 接客業소 종사자 교육 : 年 2回 929名

均衡的인 地域開發 促進

1. 道路網 擴充

【總 102個路線 898.46km, '94까지 鋪裝率 44.8%】

- 高速道路 : 1個로선 51.30km (포장율 100%)
- 國道 : 3個로선 150.27km (포장율 100%)
- 地方道 : 5個로선 70.29km (포장율 77%)
- 郡道 : 16個로선 254.60km (포장율 27%)
- 農漁村道路 : 77個로선 372.00km (포장율 21%)

○ 郡道 擴 · 鋪裝 ————— 8.6km 4,302百萬元

- 무이 ~ 상진부 : 4.6km 2,301百萬元

- 신기 ~ 마평 : 3.0km 1,501百萬元

- 한탄 ~ 마하 : 1.0km 500百萬元

○ 農漁村道路 擴 · 鋪裝 ————— 8.1km, 2,091百萬元

- 운교 1 ~ 운교 2 : 3.1km 800百萬元

- 대화 4 ~ 대화 7 : 1.8km 466百萬元

- 무이 1 ~ 무이 2 : 1.2km 309百萬元

- 차항 1 ~ 차항 2 : 2.0km 516百萬元

※ 道路 鋪裝率 : 44.8% ⇨ 46.6%

2. 都市 基盤施設의 擴充

○ 橫溪橋 架設 (60m, 750百萬元)

- 推進實績 : 250百萬元 투자(지장물 2件, 設計)
- '95 計劃 : 500百萬元 투자(교량 60m, 접속도로 160m)

○ 平昌 달동네 진입로 정비(400m, 900百萬元)

- 推進實績 : 450百萬元 투자(토지 688坪, 지장물 43件)
- '95 計劃 : 450百萬元 투자(진입로 확·포장 400m)

○ 橫溪 진입로 확·포장 (720m, 900百萬元)

- 推進實績 : 450百萬元 투자(용지보상 838坪, 도로확장 280m)
- '95 計劃 : 450百萬元 투자(도로 확·포장 720m)

○ 도시계획 再整備 : 2個地域(蓬坪, 橫溪), 300百萬元

○ 지역주민 宿願事業 해결

【 住民宿願사업의 卽興건의, 善心公約 拂拭 】

- 事業選定 : 小規模 219件, 7,196百萬元, 大規模 1月中 選定
※ 小規模 50百萬元 未滿, 大規模 50百萬元 以上
- 宿願解決 : 사업 優先순위에 의거 年次 투자

- '95 計劃 : 21件 578百萬元

國民餘暇地帶開發과 文化·體育振興

- 自然環境과 調和로운 開發로 冬季스포츠 搖籃 조성
- 향토문화 暢達과 健康·自尊의 郡民體位 향상

1. 農業과 觀光産業 接木으로 觀光所得의 地域化

○ 觀光受容 態勢 확립

- 觀光受容 주민 意識變革 : 親切, 清潔, 滿足의 觀光要員化
- 鄉土食品, 상품 개발 : 지역 土種產品 발굴·판매

○ 觀光소득 獲得 방안 講究

- 鄉土飲食 판매점 육성 : 郡 公認으로 信賴感 認定
- 民泊및농특산물판매확대 : 民泊의 高級化, 농특산물 名品化

○ 大關嶺 눈꽃 祝祭 : 傳統스키, 黃柄山사냥놀이, 눈 彫刻競演등

【 봉평 메밀 觀光村 造成 】

- 對 象 마 을 : 蓬坪面 綿溫里 (휘닉스파크주변마을)
- 국토이용계획變更 : 준농림지역 ⇨ 준도시지역
- 메밀 觀光 商品化 : 토산품 판매장, 요리실습장 100坪
메밀재배 (사진촬영場) 15,000坪

2. 國際冬季 스포츠大會誘致對備

- 99 冬季 아시안 게임의 誘致 확정
 - 10여個國 10,000여名(스키, 빙상)
- '97 월 드 컵 스키 대회 龍平 개최 內諾
 - 20여個國 100여名(남자回轉, 大回轉)

○ 스포츠大會 實務 企劃團 설치 운영

- 企劃團 : 20名(평창군, 용평, 보광, 성우리조트)
- 機能 : KOC, 문체부, 강원도 關係部署 실무협조, 황계 도시환경개선, 숙박, 스포츠시설 확충

○ 스포츠 施設의 國際 規格化 확충

平昌郡 : 龍平리조트, 普光휘닉스파크리조트+ **橫城郡** : 成宇리조트

【施設總規模】

- 競技場 施設 : 슬로프 24면 ⇨ 55면, 리프트 16기 ⇨ 31기
크로스컨트리 10km, 氷上경기장 5개소
- 宿泊 시설 : 既存 1,063室 5,914名 ⇨ 3,874室 28,860名

3. 民間資本 誘致 觀光開發

○ 龍平리조트 施設 擴充

- 競技場 施設 : 슬로프 24면 ⇨ 33면, 리프트 16기 ⇨ 19기
크로스컨트리 10km, 氷上경기장 1개소
- 宿泊 시설 : 1,063室 5,914名 ⇨ 1,564室, 7,918名
(호텔 242室, 콘도 1,271室, 유스호스텔 51室)

○ 휘닉스파크 리조트타운 開發 ('93 ~ '97) ——— 綜合進度 27%

- 位置 : 蓬坪面 綿溫, 眞鳥, 武夷里 一圓 (株, 普光)
- 面積 : 3,089km (1,152千坪), 3,089億원 投資
- 競技施設 : 스키장(슬로프 10면, 리프트 6기) 골프장, 체육시설
- 宿泊施設 : 1,363室 16,210名(호텔 223室, 콘도 1,140室)

○ 韓國콘도 簡易스키場 ('93 ~ '95) ————— 綜合進度 30%

- 位置 : 道岩面 龍山里 山 50-2(株, 아시아나 개발)
- 面積 : 124,086m² (37千坪)
- 施設 : 슬로프3면, 리프트 2기, 宿泊施設 198室, 429億원 투자

○ 五台山 觀光호텔 ('93 ~ '95) ————— 綜合進度 16%

- 位置 : 珍富面 間坪里 221(株, 現代綜合建設)
- 施設 : 敷地 5,420坪, 호텔 255室, 175億원 투자

4. 鄉土文化 繼承 發展

○ 「第18回 魯城祭」의 鄉土文化 축제화

- 行 事 主 管 : 36個 기관, 단체 공동주관
- 民俗·文化 行事 : 忠義祭, 民俗競演, 노래자랑, 詩畫展等
- 體 育 行 事 : 축구, 배구, 테니스, 육상, 피구등

○ 光復 50周年 기념행사 추진

- 민족 發展史 弘報 : 畫報제작 배부

- | | | |
|--------------|-------------|-------------|
| • 光復 | • 6.25民族受難期 | • 60年代 國家再建 |
| • 70年代 經濟成長期 | • 80年代 繁榮期 | • 90年代 民族統一 |

- 慶祝行事 : 光復節 기념행사, 민속경연대회

○ 定道 600周年 기념사업 추진

- 紀念 植樹 : 전 家口 郡木(젓나무)심기운동 전개
- 紀念 行事 : 郡民등산대회(기념품증정), 읍면한마당 체육대회

5. 李孝石 遺跡 保全 및 觀光地化

—【小說 “메밀꽃 필 무렵” 背後地】—

- | | |
|-----------|-------------------------------|
| • 遺 跡 | : 生家, 忠州집터, 물레방아터, 노루목고개, 여울목 |
| • 象 徵 物 | : 可山公園, 銅像, 물레방아, 文學碑, 詩碑 |
| • '95 計 劃 | : 可山公園 마무리(가옥철거 1棟, 造景), 白日場 |

6. 郡民 삶의 質 向上과 自尊意識 提高

○ 郡民體力 向上

- 生活體育 육성 : 7個단체(축구, 배구, 테니스등) 7百萬원
- 郡實業팀 보강 : 씨름 ⇨ 레슬링(指導者 1, 選手 5) 111百萬원

○ 大和綜合體育館 建立('93 ~ '96) ————— 1,162百萬원

- 規 模 : 부지 1,457坪, 延建坪 564坪(地下1, 地上2層)
(경기장, 觀覽席, 舞臺, 샤워장, 탈의실)
- 事業費 : 1,162百萬원(敷地 312, 建築費 850)
- 推進實績 : 부지매입, 設計 312百萬원 투자
- '95 計劃 : 건축공사, 650百萬원 투자

○ 平昌 弓道場 建立('94 ~ '95) ————— 235百萬원

- 規 模 : 196坪(弓道場, 亭子閣)
- 推進實績 : 부지확보, 설계, 착공
- '95 計劃 : 弓道場, 亭子閣, 235百萬원 투자

懸 案 事 項

1. 蓬坪都邑整備 마무리('93 ~ '95)

- 整備對象 : 도로정비 1,661m 상·하수도 4,652m
토지보상 4,695坪, 건물정비 57棟
- 所要事業費 : 4,393百萬元(토지보상 3,781, 공사비 612)

- 推進狀況 : 2,462百萬元 투자(國道費 801, 郡費 1,661)
- '95 計劃 : 1,000百萬元 투자(郡費 1,000)
- '95不足事業費 931百萬元 지원 要望

2. 平昌 綜合藝術會館 建立('94 ~ '98)

- 位 置 : 平昌邑 鍾阜里 山 66-6
- 規 模 : 延建坪 1,190坪(地下1, 地上2層)부지 7,478坪
- 主要施設 : 대공연장 500席, 전시실, 郷土史料室
- 所要事業費 : 6,400百萬元(既確保 1,800, 今後所要 4,600)

- 推進狀況 : 100百萬元 투자(郡費 100), 설계, 착공
- '95 計劃 : 1,700百萬元 투자(道費 1,400, 郡費 300), 建物骨組工事
- 文藝振興基金 500百萬元 支援 申請('94 10月)

地域内 他機關 投資事業

【文化體育部】

○ 韓國 青少年 修練마을 造成('93 ~ '96)

- 位 置 : 龍坪面 白玉浦里 山 154-1番地 一圓
- 敷地面積 : 140千坪
- 主要施設
 - 管理시설 : 管理棟, 研修棟, 宿泊棟 등
 - 運動시설 : 綜合運動場, 蹴球場, 排球場, 테니스장 등
 - 修練시설 : 캠프파이어장, 자연탐사장, 야영장 등
- 所要事業費 : 23,700百萬元

- '94까지 推進實績 : 부지매입, 진입로 교량가설, 부지정지

- '95 計 劃 : 管理棟, 研修棟, 宿泊棟 등

【原州國土管理廳】

○ 平昌우회도로개설('94 ~ '97) : 延長 1.4km, 幅 18m, 8,142百萬元

○ 珍富우회도로개설('94 ~ '98) : 延長 4.3km, 幅 18m, 13,000百萬元

평창군농촌지도소북부지구지도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 번	안 호	208
--------	--------	-----

제출년월일 : 1995. 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농촌지도소 읍면지도 폐지후 본소와 거리가 먼 진부, 도암면 지역 농촌지도 사업을 위하여 평창군농촌지도소 북부지구지도소(도암면 횡계1리 소재)를 설치 운영 하였으나
- '93. 9. 3 읍면농민상담소 운영지침에 의거 농촌지도소 하부 조직으로 읍면 농민상담소 5개면 5개소(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를 설치 운영하므로 전읍 면에 농민상담소 설치가 요구되어 북부지구지도소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폐지되는 지구지도소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평창군농촌지도소 북부지구지도소	평창군 도암면 횡계1리	진부, 도암면

조례 제 호

평창군농촌지도소북부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평창군농촌지도소북부지구지소설치조례(조례제1197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09
----------	-----

제출년월일 : 1995. 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 안 이 유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원금은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세입재원 규정(제3조)

-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한국전력공사가 정한 지원금총액의 100분의10)

나. 세출분야 규정(제3조)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 및 공공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시설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①이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발췌서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 ① 지원사업은 지역지원사업과 홍보사업으로 한다.

② 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 및 육영사업으로 한다.

③ 홍보사업은 전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원사업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원금의 결정) ① 기금에서 지역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및 건설중인 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발전소의 시설규모·설비이용율·소재지 및 발전원을 고려하여 정화되, 발전소의 가동기간 및 건설기간의 구분에 따라 정한 상한금액 및 하한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2. 가동중인 수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정하되 이 지원금의 금액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홍보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5조(회계의 구분) ②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1
----------	-----

제출년월일 : 1995. 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 안 이 유

-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이 있는 읍·면에서는 읍·면 직원으로 하여금 시장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소요된 시간과 인력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세외수입이 극히 저조한 바,
- 징수반원의 사기진작 및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위해서 시장사용료 징수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가. 시장사용료 인상 [별표 2]

- 상설시장 장육, 노점의 시장사용료를 현행 7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
- 정기시장 장육, 노점의 시장사용료를 현행 3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 가축의 시장사용료를 현행 2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
- 화물자동차(2톤이상)의 시장사용료를 현행 4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
- 화물자동차(2톤미만)의 시장사용료를 현행 3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
- 우마차, 담차, 하우마를 삭제 (제3호, 제4호, 제5호)
- 경운기를 신설 (제7호)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시장관리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 장 사 용 료

구	분	기	준	사			용	료		
1. 상설 및 경기시장의 계속사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하"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 " 100분의 8 " 100분의 6						
가. 상설시장 장옥		연 평당								
나. 상설시장 노점		"								
다. 경기시장 장옥		"								
라. 경기시장 노점		"								
2. 상설 및 경기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				1급지			2급지		3급지	
가. 상설시장 장옥		1일1평당					500원		300원	
나. 상설시장 노점		1일1평당					500원		300원	
다. 경기시장 장옥		1일1평당					300원		200원	
라. 경기시장 노점		5시간이상 사용시					300원		200원	
마. 가		1일1평당					200원		100원	
축		5시간미만 사용시								
바. 소채류 기타										
① 화물자동차 (2톤이상)		1회1대당					3,000원		2,200원	
② 화물자동차 (2톤미만)		1회1대당					2,200원		1,500원	
③ 리아카		1회1대당					300원		200원	
④ 경운기		1회 1대당					800원		600원	
⑤ 기타이용 이동판매		1회 1반입단위마다					100원		100원	

※ 비고 : 1급지는 시지역

2급지는 읍 및 군청소재지

3급지는 기타지역

신 · 구조문 대비표

[별표 2]

구 분	기 준	행 행			개 정			
		사 용 료			사 용 료			
1. 상설 및 경기시장의 계속사용 가. 상설시장 장옥 나. 상설시장 노점 다. 경기시장 장옥 라. 경기시장 노점	인 평당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과세시 가표준액(이하"시가표준액" 이라한다)의 10/100 시가표준액 의 8/100 시가표준액 의 8/100 시가표준액 의 6/100			< 현행과 같음 >			
	인 평당							
	인 평당							
	인 평당							
	인 평당							
2. 상설 및 경기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사용 가. 상설시장 장옥 나. 상설시장 노점 다. 경기시장 장옥 라. 경기시장 노점 마. 가 축	인 평당	1급지	2급지	3급지	구 분	1급지	2급지	3급지
	1일1평당		70원	50원			500원	300원
	1일1평당		70원	50원			500원	300원
	1일1평당		40원	30원			300원	200원
	5시간이상 사용시		30원	20원			300원	200원
	1일1평당 5시간미만 사용시		20원	10원			200원	100원

신 · 구조문 대비표

[별표 2]

구 분	기 준	현 행			개 정			
		사 용 료			사 용 료			
		1급지	2급지	3급지	구 분	1급지	2급지	3급지
바. 소채류 기타								
① 화물자동차 (2톤이상)	1회1대당		400원	300원			3,000원	2,200원
② 화물자동차 (2톤미만)	1회1대당		300원	200원			2,200원	1,500원
③ 우마차	1회1대당		100원	80원	삭 제		-	-
④ 담차	1회1대당		70원	60원	삭 제		-	-
⑤ 리어카	1회1대당		40원	30원			300원	200원
⑥ 하우스	1회 1반입단위마다		20원	10원	삭 제		-	-
⑦ 담군 기타	1회 1반입단위마다		10원	10원	삭 제		-	-
⑧ 경운기	1회 1대당		-	-	신 설		800원	600원
⑨ 기타이용 이동판매	1회 1반입단위마다		-	-	신 설		100원	100원

※ 비교 : 1급지는 시지역

2급지는 읍 및 군청소재지

3급지는 기타지역

관계법령발췌서

○ 도·소매업진흥법

제13조(정기시장의 개설 및 운영) ①정기시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경우에 한한다)이 이를 개설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정기시장의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평창군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0
----------	-----

제출년월일 : 1995. 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94지방자치단체정기재물조사 결과 공통건의사항을 수용, 물품관리의 현실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비품 구분기준 조정(물품관리조례 별표1)

- 내용연수가 1년미만일 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에서 1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조정

나.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생략조항 삭제(동조례 제8조 단서)

-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때에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되
다만 관서당경비에 의한 경우는 제외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물품매입.수
리.제조에 대한 통제 강화로 무분별한 물품매입.수리.제조의 지양

다. 불용품 감정액 상향조정(동조례 제17조 제4항)

- 불용물품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1천만원이상
인물품으로 감정액상향조정으로 물품관리의 현실성 및 효율성 도모

라. 법정장부 축소(동조례 제24조제1항)

- 물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제외시킴으로서 적극적인 물품관리 도모

평창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제4항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으로 한다.

제24조 제1항중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도서대장"으로 한다.

[별표 1] 품종구분기준란의 (1)비품 ②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정
<p>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u>다만, 관서당접되고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제17조 (불용품의 매각)</p> <p>① ~ ③ (생략)</p> <p>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u>3백만원 이상</u> 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⑤ ~ ⑧ (생략)</p> <p>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소모품대장 5. 도서대장 <p>[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p> <p style="padding-left: 20px;">○ 물품의 종류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 품종구분 기준</p> <p style="padding-left: 20px;">(1) 비품 - 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u>5만원</u> 이상의 물품 ③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p> <p style="padding-left: 20px;">(2) 소모품 (생략)</p>	<p>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 ----- ----- ----- ----- < 삭제 > -----</p> <p>제17조 (불용품의 매각)</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 ----- -----</p> <p>⑤ ~ ⑧ (현행과 같음)</p> <p>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 등록부 4. 도서대장 <p style="padding-left: 20px;">< 삭제 ></p> <p>[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p> <p style="padding-left: 20px;">○ 물품의 종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 품종구분 기준</p> <p style="padding-left: 20px;">(1) 비품 - ① ----- ----- ----- ② ----- 10만원 ----- ----- ③ ----- -----</p> <p style="padding-left: 20px;">(2) 소모품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지방재정법 제103조(재물조사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재물조사의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수있다.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안번호

212

제출년월일 : 1995.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95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균형장치를 확보하고
- 기존의 지방행정기구·정원 관련법령 일원화에 따른 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실과설치 - 기획실외 14과(제2조)
- 나. 과별분장사무 규정(제3조~제18조)

평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평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문화공보실·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사회과·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산업과·지역경제과·축산과·산림과·건설과·도시과·민방위과를 둔다.

제3조(기획실) 기획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행정전반의 기획 및 조정통제
2. 중·장기계획수립 및 조정
3. 기본운영계획수립과 심사분석
4. 행정실적 심사분석
5. 군정조정위원회
6. 지시사항 처리(대통령, 총리, 지사)
7. 군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
9. 자금수급계획 및 예산운영
10.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11. 자체결산심사
12. 전시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13. 법무행정의 종합계획수립 조정
14. 조례제정 및 개폐 '안' 심사, 의회상정, 공포
15.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
16. 법령, 자치법규의 질의해석 및 개폐
17. 법령집, 관보보급에 관한 사항
18. 소송, 행정심판사무의 처리 및 통제

19. 통계(일반통계, 농업통계, 경제통계) 업무
20. 국제협력 관련업무
21. 공무원 소청에 관한 사항
22. 기타 기획, 예산, 법무 및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제4조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보계획수립 및 시행
2. 군정계몽선전 및 보도
3. 언론공보자료의 수집편찬
4.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분석
5. 공연장 및 공연장지도감독
6. 문화재보호관리
7. 사회단체등록, 출판, 향교, 사찰관리
8. 예술문화단체의 지도육성
9. 공보매개체의 보급육성
10. 해외교포와의 유대강화
11. 반공계몽업무
12. 관광계획의 수립 및 실시
13. 관광지조성 및 개발
14. 관광객유치 및 안내
15. 관광협회지도 육성
16. 기타 공보·관광에 관한 업무

제5조 (내무과) 내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및 사업소, 읍·면의 직제, 정·현원인사관리
2.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
3.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사항
4. 행정사무의 관리개선
5. 선거 및 국민투표
6. 외국인 등록

7.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8. 반상회 운영 지원
9. 하부행정기관 지도
10.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11. 서무
12. 각종 회의 및 행사, 의전관리
13. 복무단속
14. 문서수발 통제
15. 보안업무
16. 공무원교육훈련 및 교양에 관한 사항
17. 행정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18.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군행정의 감사계획과 시행
20.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21. 공무원비위조사
22. 민원사무처리상황 검열
23. 민원1회 방문처리
24.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여부 점검지도
25. 민원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26. 각종민원 편의시책 및 제도개선
27. 행정규제 완화 및 행정쇄신주관
28. 국민편의 시책개발
29. 각종 민원서류의 수발 통제
30. 행정서사 및 인장업 지도 감독
31. 팩시밀리 및 텔레타이프 시설운영 유지관리
32. 통신 및 전산보안관리
33. 군본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전산시설 개발계획 수립시행
34. 행정전산화계획 수립집행
35. 그 밖에 다른과 다른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6조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새마을농촌건설
3. 농어촌마을길포장사업
4. 부락세시설물 관리
5. 새마을 시설물 관리
6. 국민운동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7. 자연보호에 관한 업무
8. 폐품 자원화운동 추진
9. 오지개발사업
10. 옥외광고물 등 관리
11. 소도읍정비
12. 취약지대책
13. 주요도로주변 환경정비
14. 국토공원화운동 추진 지원
15. 건전생활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시행
16. 체육진흥 지원
17. 청소년 대책
18. 청소년진로 생활상담지도
19. 그 밖에 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제7조 (재무과)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
2. 세외수입의 징수
3. 세출예산 경리 결산
4. 공채, 국채, 금융
5. 군 금고의 감독
6. 물품출납보관 처분
7. 원천징수 불입
8. 군의 재산관리 및 취득처분

9.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10. 체비지 및 공공용지 관리 처분
11. 부동산 평가업무
12. 지방세 과세결정에 관한 사무
13. 부동산 가격통제 사무
14. 지적공부 보존 관리
15. 외국인 토지 권리취득업무
16. 지적민원 처리
17. 토지조사 및 지적측량
18. 지적장비 운영 및 관리
19. 토지분할허가에 관한 사항
20. 토지거래 규제에 관한 업무 (국토이용관리법 제3장의) 다만,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의 제외
21. 개별지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22.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23.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24. 그 밖의 재정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 (사회과) 사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주민 생계구호 및 노임취로사업
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3.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및 직업훈련
4. 행여부랑인 보호 및 사망자 처리
5. 재해구호 및 불우이웃돕기
6. 장애인 보호관리
7. 보사동원계획에 관한 사항
8.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9. 환경위생
10. 부정불량식품 단속
11. 주민의료보호 업무처리

12.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사업, 재산상황의 검사 감독
13. 지역의료보험료 징수, 독려지원
14. 기타 지역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 및 협조지원
15. 그 밖에 주민복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10조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추진
2. 환경보전 및 홍보
3. 신고대상 배출시설 관리 감독
4.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
5.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6. 폐기물관리 및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
7. 분뇨종말처리장 지도관리
8. 분뇨, 오수정화시설 청소지도 감독
9. 일반쓰레기, 분뇨처리종합계획 수립
10. 생활쓰레기수거 처리 및 업소 감독
11. 그 밖에 환경보호와 관련한 사항

제11조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복지행정의 종합기획
2. 노인복지대책
3. 공설, 공원묘지 납골당 및 매화장에 관한 사항
4. 가정의례 준수지도
5.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아동복지증진
7. 부녀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추진
8. 부녀아동 후생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9. 요보호여성 선도, 보호
10.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11. 부녀아동·상담 및 상담소 운영 지도감독

12. 불량인 방지
13. 고아·기아·부랑아·정신박양아의 보호
14. 그 밖에 가정복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산업과) 산업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 합리화
3. 농지의 보존, 이용 및 개량에 관한 사무
4. 농업단체의 지도 육성
5. 식량작물증산 장려
6. 농작물 재해대책 및 병충해 방제
7.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
8. 농산물유통기획 총괄
9. 농산물유통업무에 관한 사항
10. 특용 및 원예증산 장려
11. 잠업증산 및 기술보급
12. 식량수급계획의 수립
13. 양곡관리, 수급조절 및 가공등에 관한 업무
14.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15. 정부의 양곡관리 대행기관 및 수탁기관 지도·감독
16. 그 밖에 산업행정에 관한 사항

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2.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
3.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에 관한 사항
4. 수출진흥과 과학기술진흥
5. 농공단지조성 및 육성지도
6. 중소기업 육성지도
7. 연료, 전기 및 계량기에 관한 사항

8. 광공업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9. 노동 및 노정
10. 노동 및 사회사업단체의 지도 감독
11. 실업대책
12. 광공업등록 및 광산개발업무
13. 담배소매업에 관한 사항
14. 시장개설 및 관리
15. 공산품 품질관리
16. 운수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17. 운수사업의 지도·감독
18.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19. 주차장 관련업무
20.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업무
21.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상공운수에 관한 사항

제14조 (축산과) 축산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행정의 종합계획조정
2. 축산자금융자 및 사후관리
3. 축산물의 유통개선
4. 가축개량 및 증축보급관리
5. 중소가축장려사업
6. 내수면개발 및 자원보호 관리
7. 내수면 수산제조업 관계사무
8. 낙농단지 육성
9. 초지조성 및 사후관리
10. 대단위(기업)목장 육성 및 관리
11. 가축위생 및 공수의 감축
12. 축산물 작업장 경영에 대한 지도 감독
13. 축산물 유통 및 단속
14. 목장 환경위생

15. 가축위생에 관한 사무
16. 그 밖에 축산행정에 관한 사항

제15조 (산림과) 산림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지이용구분조사 및 장기계획 수립시행
2. 산림기본통계 및 임산물생산 통계
3. 양묘 및 조림사업계획 실행
4. 육림 및 산림보육 관리지도
5. 무궁화, 야생화목류, 가로수식재관리
6. 임산물 생산수급 및 반출관리
7. 영림계획 작성 및 운영
8.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9. 목재수급 조절 및 벌채사업 실행
10. 임업진흥촉진지역 및 특수지역개발
11. 산불방지
12. 산림병해충 방제
13. 야생조수보호 및 유해조수구제
14. 수렵장 운영 관리
15. 화전정리지 관리 및 산림내 불법건조물 단속
16. 임산물 반출관리 (극인관리 포함)
17. 산지정화 및 산행질서 지도·단속
18. 자연휴양림 조성 및 수목원 조성관리
19. 임야매매증명 발급 및 사후관리
20. 임산물가공·이용 및 유통지도 (제재소, 가공공장 등)
21. 임업관계 단체육성지도 (산림조합, 독립가, 후계자, 푸른숲선도원 등)
22. 산주교육 및 임업기술 지도
23. 그밖에 산림행정에 관한 사항

제16조 (건설과) 건설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자연자원의 보존이용개발

2. 치수사업 계획수립 실시
3. 수자원 개발
4. 도로 하천에 관한 허가 및 공사감독
5. 재해예방 및 복구
6. 도로·교량개발 계획수립 실시
7. 접도구역 관리
8. 농지개발 및 농업용 시설
9. 군 건설종합계획 수립
10. 토지이용 계획수립
11. 농업용수개발
12. 경지정리 및 개간
13. 관개시설 개보수
14. 개간허가 및 지도
15. 각종 농지개량조사의 집행 감독
16. 정주권개발 업무
17. 토목공사의 측량설계 시공감독
18. 공사의 시행 감독
19. 그 밖에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

제17조(도시과)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건설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도시계획구역내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보상
3.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4.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
5. 건축허가 및 건설업자 지도감독
6. 건축허가 및 무허가 건물 단속
7. 국민주택 및 주택자금관리
8. 농어촌주거환경개선
9. 택지조성
10. 주택자금관리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11.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자재보급 등 주택행정
12. 상·하수도 사업계획 수립시행
13. 수도료징수 및 무허가수도 단속
14. 수원지 유지관리
15. 음용수 수질관리
16. 간이상수도시설 및 유지관리
17. 그 밖에 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제18조 (민방위과)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방위 계획수립 (소방계획 포함)
2. 민방위대의 조직 편성 및 동원
3. 민방공계획 수립
4. 민방위 시설 및 장비관리 (소방시설 및 장비관리)
5. 민방위 교육훈련 및 계몽
6. 비상대책업무
7. 전시근로 동원에 관한 사항
8. 병무업무
9. 공익근무요원 관리
10. 그 밖에 민방위에 관한 사항

제19조 (계 설치 및 사무분장) ①실·과 밑에 그 하부조직으로 계를 둔다.

②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시·군·자치구의 기구 설치기준) ①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시·군·자치구 (이하 '시·군·구'라 한다)의 기구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시·도지사는 시·군·구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여야 하고,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③시·군·구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계이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안번호	2/3
------	-----

제출년월일 : 1995.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정이유

- '95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 공무원 총정원을 규정하여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균형장치를 확보하고
- 공무원 증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로 예산을 절감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 총수 규정 (제2조)

- 본청정원 208 명
- 직속기관 99 명
- 사업소 8 명
- 읍면 (출장소포함) 249 명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평창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 청 : 208 명
2. 직속기관 : 99 명
3. 사 업 소 : 8 명
4. 읍·면(그 출장소를 포함한다) : 249 명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평창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평창군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4
----------	-----

제출년월일 : 1995. 2.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개정이유

일상 교통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일반주거지역에도 일부 허용하여 완화하고 기타 용도지역 특성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일부 강화하여 건축활동과 관련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층수가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7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미관지구 또는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할 경우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의무 설치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설치를 권장하도록함 (조례제14조)

나.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종전에는 자동차관련시설을 전혀 할수없었으나, 앞으로는 주차장·세차장 (너비8미터이상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한함), 정비학원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함(조례제18조제11호)

다.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각지역별 자동차관련시설중 세차장 및 동물관련시설의 일부를 강화하고, 주거지역에서는 교정시설의 건축을 할수없도록 함 (조례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

라. 법의 개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단란주점을 할 수 없도록 하였음(조례제2조)

마. 종전에는 공동주택을 건축할시 외벽으로부터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를 유형별 1미터에서 6미터까지로 하였고, 처마끝에서의 이격거리를 0.5미터에서부터 5미터까지 인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로부터는 2미터에서 6미터로, 처마끝으로부터는 1미터에서부터 5미터까지로 각각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이 되도록 공지를 확보하게함(조례제 52조제1항제3호)

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하는 거리 제한사항중,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나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의 건축물 및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로서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얻어 합병하는 경우에는 띄우는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신설 하였음(조례제53조제2항)

사.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 하고자하는 경우 통로 출입구의 방화셔터등 기타사항이 적합할시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하였음(조례제 53조제3항)

평창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를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8조중 제3호 및 제11호 내지 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 한다)
11.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반판매소 및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주유소·저장 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세차장(너비8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 이상 접한대지에 한한다) 및 정비학원
13. 동물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

제19조중 제11호 및 제1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5를 삭제한후 제16호 내지 제18호를 제15호 내지 제17호로 한다.

11.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12. 동물 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

제20조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1조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호를 삭제 하며, 제11호 내지 제15호를 제10호 내지 제14호로 한다.

9.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2조중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

제29조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52조 제1호 및 제2호중 지역구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 역 구 분
<p>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p>

2.

지 역 구 분
<p>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p>

제53조중 제1항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제5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 3미터 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띄어 건축하여야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 미터이상)

3. 제5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구 분		거 리		외벽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공동주택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		2.0 이상	1.0 이상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것	개구부가 있는곳	3.0 이상	2.0 이상
			개구부가 없는곳	2.0 이상	1.0 이상
	다세대 주택이 아닌 경우	연립주택		3.0이상(2층이하인 경우에는 2.0이상)	2.0이상(2층이하인 경우에는 1.5이상)
		아파트	20세대 미만	4.0이상으로	3.0이상으로
			20세대 이상	6.0이상으로	5.0이상으로

② 영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5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
2.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의 건축물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 통로 출입구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위한 적절한 규모로서,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군수는 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는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 액을 조각, 회화등의 <u>미술장식품을 설 치하게 하여야 한다.</u> 다만, 동물관련시 설, 식물관련시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로하지 아니하다.</p>	<p>제14조 - 등의 <u>미술장식품을 설 치를 권장하여야 한다.</u> - - - - - - - - - -</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18조 (생략)</p>	<p>제18조 (현행과 같음)</p>
<p>1. - 2. (생략)</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고등학교 를 제외한다)</u></p>	<p>3. <u>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다)</u></p>
<p>4. - 10. (생략)</p>	<p>4. - 10. (현행과 같음)</p>
<p>11.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u></p>	<p>11. <u>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반판매 소 및 지하에 위험물을 저장하는것 으로서 주유소·저장탱크용량 10톤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 한다.)</u></p>
<p>12. <u>교정시설</u></p>	<p>12. <u>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 (너비8미터 이상 도로에 6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한한다) 및 경비학원</u></p>
<p>13. <u>동물관련시설</u></p>	<p>13. <u>동물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u></p>
<p>14. - 17. (생략)</p>	<p>14. - 17.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9조 (생략)</p> <p>1. - 10. (생략)</p> <p>11. <u>자동차관련시설</u></p> <p>12. <u>동물관련시설</u></p> <p>13. - 14. (생략)</p> <p>15. <u>교정시설</u></p> <p>16. <u>군사시설</u></p> <p>17. <u>방송·통신시설</u></p> <p>18. <u>청소년시설</u></p>	<p>제19조 (현행과 같음)</p> <p>1. - 10. (현행과 같음)</p> <p>11. <u>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u></p> <p>12. <u>동물관련시설(축사에 한한다)</u></p> <p>13. - 14. (현행과 같음)</p> <p><삭제></p> <p>15. <u>군사시설</u></p> <p>16. <u>방송·통신시설</u></p> <p>17. <u>청소년시설</u></p>
<p>제20조 (생략)</p> <p>1. - 11. (생략)</p> <p>12. <u>자동차관련시설</u></p> <p>13. (생략)</p>	<p>제20조 (현행과 같음)</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u></p> <p>13. (현행과 같음)</p>
<p>제21조 (생략)</p> <p>1. - 8. (생략)</p>	<p>제21조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9. <u>자동차관련시설</u></p> <p>10. <u>동물관련시설</u></p> <p>11. <u>발전소</u></p> <p>12. <u>군사시설</u></p> <p>13. <u>교정시설</u></p> <p>14. <u>관광휴게시설</u></p> <p>15. <u>청소년시설</u></p>	<p>9. <u>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u></p> <p><삭제></p> <p>10. <u>발전소</u></p> <p>11. <u>군사시설</u></p> <p>12. <u>교정시설</u></p> <p>13. <u>관광휴게시설</u></p> <p>14. <u>청소년시설</u></p>
<p>제22조 (생략)</p> <p>1. - 14. (생략)</p> <p>15. <u>자동차관련시설</u></p> <p>16. - 21. (생략)</p>	<p>제22조 (현행과 같음)</p> <p>1. - 14. (현행과 같음)</p> <p>15. <u>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은 제외한다)</u></p> <p>16. - 21. (현행과 같음)</p>
<p>제29조 (생략)</p> <p>1. - 3. (생략)</p> <p>4. <u>근린생활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u></p> <p>5. - 14. (생략)</p>	<p>제29조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u></p> <p>5. - 14. (현행과 같음)</p>

제52조(생략)

현행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용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물저장소·유독물판내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폐차장·정비공장	<u>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u>	4	6	모든 건축선

개정안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용도	지역구분	띄어야 할 거리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물저장소·유독물판내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폐차장·정비공장	<u>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u>	4	6	모든 건축선

현 행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용 도	지 역 구 분	띄 어 야 할 거 리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창고시설·운수시설	<u>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업지역 및 시설용지 지구에는 제외(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u>	3	4	주된 도로의 건축선

개정안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단위 : 미터)

용 도	지 역 구 분	띄 어 야 할 거 리		적용대상 건축선
		1천제곱미터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창고시설·운수시설	<u>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u>	3	4	주된 도로의 건축선

현 행	개 정 안
<p>제53조① (생략)</p> <p>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제5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 3미터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u>일반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미터이상</u>)</p> <p>2. (생략)</p>	<p>제53조① (현행과 같음)</p> <p>1. ----- ----- ----- ----- ----- 다. 다만, <u>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 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 (<u>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미터이상</u>)</p> <p>2. (현행과 같음)</p>

현 행

3. (생략)

(단위 : 미터)

			의벽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처마끝으로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공동주택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것	<u>1.0이상</u>	<u>0.5이상</u>
		3층 또는 4세대 이상인것	개구부가 있는곳	<u>2.0이상</u>
	개구부가 없는곳		<u>1.0이상</u>	<u>0.5이상</u>
	다세대 주택이 아닌 경우		연립주택	<u>3.0이상(2층이하인 경우에는2.0이상)</u>
		아 파트	<u>6.0이상 또는 높이의 0.5배중 작은것 이상</u>	<u>5.0이상 또는 높이의 0.5배중 작은것 이상</u>

개정안

3. (현행과 같음)

(단위 : 미터)

구 분		거 리		외벽각 부분(노대 및 계단을 포함한다)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치마끝으로 부터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직각방향의 수평거리
공동주택 (당해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다세대주택인 경우	2층이하로서 3세대 이하인것		2.0이상	1.0이상
		3층 또는 4세대이상인것	개구부가 있는곳	3.0이상	2.0이상
			개구부가 없는곳	2.0이상	1.0이상
	다세대 주택 이 아닌 경우	연립주택		3.0이상 (2층이하인 경우에는 2.0이상)	2.0이상 (2층이하인 경우에는 1.5이상)
		아 파 트	20세대 미만	4.0이상	3.0이상
20세대 이상	6.0이상		5.0이상		

현 행	개 정 안
<신설>	<p>② 영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로서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2.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의 건축물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p>③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연결통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 출입구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통행을 위한 적절한 규모로서, 도시 미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할 수 있다.</p>

관계법령발췌서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안의 조경) 제3항 : 조례 제14조

- 건축법 시행령 별표3(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조례 제18조
 - 마.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제외한다)
 - 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 파. 자동차관련시설
 - 하. 동물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4(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조례 제19조
 - 카.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6(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조례 제21조
 - 자.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7(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조례 제22조
 - 거. 자동차관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4(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중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 조례 제29조
 - 라.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81조(대지안의 공지) : 조례 제52조 및 제53조

-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93. 8. 9 개정)

1. 건축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p>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등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p>	<p>3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 5. 28개정)</p>
<p>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 등 물품의 저장 또는 작업 등으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p>	<p>3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4. 5. 28개정)</p>
<p>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 및 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p>	<p>2미터 이상</p>

대 상 건 축 물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공동주택	3미터 이상(아파트에 한한다)
기타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

대 상 건 축 물	건축조례에서 정할 건축기준의 범위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해공장·위험물제조소·위험물저장소 등 공해 및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것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2미터(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미터)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4.7.28개정)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전시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미터 이상.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	3미터(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1미터) 이상
기타 인접건축물의 통풍·환기 및 연소차단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0.5미터 이상

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는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수 등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3. 시장 등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